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목적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시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100%부담한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서비스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부담금 (15%기준)	345,960	312,510	222,855	205,590	176,550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 시간당 본인부담금)

방문당 시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30분	16,630	2,490	16,940	2,541
60분	24,120	3,610	24,580	3,687
90분	32,510	4,870	33,120	4,968
120분	41,380	6,200	42,160	6,324
150분	48,250	7,230	49,160	7,374
180분	54,320	8,140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0	68,030	10,205

· 방문목욕 급여비용(본인부담금)

구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0	86,480	12,970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0	77,970	11,690
차량 미 이용	47,670	7,150	48,690	7,300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법이 인정하는 인정수가와 인정일수에 준한다.

4.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준수한다.

5. 서비스 이용 전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한다.

6. 신원인수인(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 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비용 부담액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서비스제공자, 수급자의 의무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③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수급자의 의무

-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변경으로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수급자의 등급변경, 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등)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센터는 익월 서비스 계획을 사전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된 계획표를 수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센터는 금월 서비스가 종료된 직 후 금월 서비스이용 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0.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종류)

①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방문목욕 서비스

③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서비스 내용)

1.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등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 하기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 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2. 제공되는 방문목욕 서비스에는 이동 목욕차량에 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고 2인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뇨·배변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을 제공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동목욕차량을 배제한 가정 내 목욕 서비스도 제공 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에 입금한다.
-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현금으로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1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수급자의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 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 만료일 도래 전 갱신

2.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해야 한다.

면책범위

3.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 ② 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③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 ④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 ② 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